

제 9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9.1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국경 간 서비스공급 또는 국경 간 서비스무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공급을 말한다.

- 가.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의 서비스공급
 - 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공급, 또는
 - 다. 일방 당사국의 공민에 의한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서비스공급
- 그러나 제10.1조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같은 투자에 일방 당사국 영역 안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제12장(금융서비스)에 정의된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전문직서비스라 함은 그 공급에 전문화된 고등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훈련이나 경력이 요구되고, 이를 수행할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제한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무역업자 또는 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고자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⁹⁻¹⁾

9-1) 양 당사국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한다”함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8조(사)에서 사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임을 양해한다.

제 9.2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의 조치를 포함하여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서비스의 생산·유통·마케팅·판매 및 제공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 다.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유통 및 운송체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일방 당사국의 영역 안의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공급 조건으로서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다른 형태의 재정적 보장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일방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또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의 위임을 받아 규제·행정 또는 그 밖의 정부 권한을 집행하는 비정부 기관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이 장은 다음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제12장(금융서비스)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한 한, 제12장의 적용을 받는 범위 안에서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
- 나. 제16장(정부조달)에 의하여 규율되는 정부조달
- 다.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 또는 그러한 보조금이나 무상지원이 국내의 서비스, 서비스 소비자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보조금 또는 무상지원의 수령 또는 계속적 수령에 부착되는 조건. 그리고
- 라. 정부권한(법 집행, 교정서비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복지, 공교육, 공적 훈련, 보건 및 아동 보호 등)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다만, 그러한 서비스가 상업적 기초 하에 또는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을 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마.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지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포함하여 운송·비운송 항공 서비스 및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⁹⁻²⁾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 (1) 항공기 보수 및 정비 서비스
-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 (3) 컴퓨터 예약 체계 서비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당사국에게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 안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타방 당사국의 공민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그러한 접근 또는 고용과 관련하여 동 공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제9.11조는 제10.1조에서 정의된 대로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도 적용된다.⁹⁻³⁾

제 9.3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국에게 부여되는 대우는, 지방정부가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와 관련하여 그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그 지방정부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일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지방정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 9.4 조 현지 주재

어느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공급의 조건으로서,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또는 거주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9-2) 양 당사국은 지상 작업 서비스가 항공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서비스의 일부임을 양해한다.

9-3) 양 당사국은 이 항을 포함하여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제10장(투자) 다절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데 양해한다.

제 9.5 조 시장 접근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또는 자국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유지 또는 채택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한하는 조치

- (1) 수량할당,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의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운용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⁹⁻⁴⁾
- (4) 수량할당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분야에 고용되거나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인 법인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형태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제 9.6 조 불합치 조치

1. 제9.3조 내지 제9.5조는 다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자국의 부속서 9A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의 불합치 조치. 또는
- 나. 가호에 언급된 불합치 조치의 존치 또는 신속한 개선. 또는
- 다. 제9.3조 내지 제9.5조와 합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가호에 언급된 개정 직전에 존재한 불합치 조치의 개정

2. 제9.3조 내지 제9.5조는 일방 당사자의 부속서 9B 양허표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11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9-4) 이 조항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일방 당사국의 조치들은 그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이 유지하는 부속서 9A에 규정된 기준의 불합치 조치. 또는
- 나. 부속서 9B에 규정된 것과 같은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기준의 또는 새로운 조치

제 9.7 조 추가 약속

양 당사국은 자격·표준 또는 면허사안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9.6조에 따른 양허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된 약속에 대하여 교섭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부속서 9C의 특정한 약속에 관한 일방 당사국의 양허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 9.8 조 미래 자유화

1.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이 정하여지는 장래 협상을 통하여, 양 당사국은 호혜의 기초 하에 그리고 권리 및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보장하여 제9.6조에 합치되도록 유보된 잔존 제한의 축소 또는 철폐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제9.7조에 추가적 약속을 추가하기 위하여 자유화를 보다 심화시킨다.

2. 당사국은 비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9.6조에 합치되도록 양허되는 잔여 제한을 추가적으로 자유화하거나 또는 제9.7조에 합치되도록 양허되는 추가적 약속을 하는 경우, 호혜의 기초 하에 그리고 권리 및 의무의 전반적인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대우를 교섭하는 적절한 기회를 타방 당사국에게 부여한다.

제 9.9 조 절 차

양 당사국은 제22.1조의 규정에 따르는 이 협정의 최초 또는 후속 검토에 관하여 다음 절차를 수립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을 통지하고 자국의 관련 양허표에 포함시키는 절차

(1)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적 약속. 그리고

(2) 제9.6조 제1항 다호에 언급된 조치의 개정. 그리고

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불합치 조치 또는 추가적 약속에 대한 협의 절차

제 9.10 조 인 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관한 표준 또는 기준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충족의 목적상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서 습득한 교육 또는 경험·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당사국 간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국인 당사국은 현재 체결되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체결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타방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국에게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위하여 교섭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습득한 교육·경험·면허 또는 증명, 또는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한 표준 또는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 또는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4. 부속서 9D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또는 증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제 9.11 조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타방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화되는 경우 행정 결정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사법·중재, 또는 행정 법원 또는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 또는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관련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과 독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국은 동 절차가 실제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검토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은 당사국에게 그러한 법원 또는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자국의 헌법구조 또는 법체계의 성격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국내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완전하다고 간주되는 신청서의 제출 이후 합리적 기간 내에 신청자에 동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부당한 지연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자격요건과 절차, 기술표준 및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동 조치들에 관한 규율에 대한 협상결과를 이 협정에 통합시키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그러한 규율은 그러한 요건이 특히 다음과 같이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유의한다.

- 가. 능력 및 서비스를 공급할 자격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의 부담이 아닐 것
-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6.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규율이 통합될 때까지, 당사국이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자격요건 및 기술표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제5항가호·나호 또는 다호에 규정된 기준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방식, 그리고
- (2) 의무 부담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7. 당사국이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 당사국이 적용하고 있는 관련 국제기구⁹⁻⁵⁾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제 9.12 조 혜택의 거부

제19.3조 및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협의를 조건으로, 당사국은 서비스가 비당사국의 인에 위하여 소유 또는 지배되고 타방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

제 9.13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안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자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으며 제9.3조와 제9.5조의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그러한 약속과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역 안에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9-5)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회원지위가 적어도 양 당사국 모두의 관련기관에 개방되어 있는 국제기관을 말한다.

3.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의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사유를 가지는 경우, 동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유지 또는 승인하고 있는 타방 당사국에게 자국 영역 안에서 관련된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일방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고, (나) 자국 영역 안에서 동 공급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게 또한 적용된다.

제 9.14 조 유보의 수정 또는 추가

1.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3월 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부속서 9A에 규정된 자국의 불합치 조치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 부속서 9B에 규정된 유보에 새로운 분야, 하위분야 또는 활동을 추가할 수 있다.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 이 협정에 의하여 각 당사국이 부담하는 약속의 전반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필요한 조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필요한 조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제20장(분쟁해결)에 따라 그 사안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2. 제1항은 부속서 9A 및 부속서 9B에 규정된 유보와 합치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 내에, 이 협정 서명일 이전에 당사국이 제9.5조와 불합치하는 조치를 유지하여 온 한도 안에서, 그러한 조치와 관련하여 부속서 9A에 규정된 자국의 유보를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 9.15 조 지불 및 송금

1.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각 당사국의 유보를 조건으로, 그리고 제9.16조

에 상정된 상황 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국은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지불 및 송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 협정조문상 국제통화기금의 회원으로서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9.16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자본거래와 관련하여,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되게 자본거래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9.16 조 국제수지 예외

1. 일방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재정상 어려움 또는 위기 상황에 있을 때, GATS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양허와 관련된 거래의 지불 및 송금을 포함하여 동 당사국이 의무를 가지는 서비스무역의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GATS 제11조 및 제12조는 이 협정에 통합되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이 협정 하에서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즉시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